2023년 장기요양 기관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 관련근거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2022.9.26.)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 개정이유

1.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조정하고, 인력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
2. 노인요양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수에 관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개정내용

1. 변경 전: 요양보호사→ 입소자 2.5명당 1명
2. 변경 후: 요양보호사→ 입소자 2.3명당 1명
3. 본인부담금 인상

등급	1일 수가(2.5명당 1명)	1일 수가(2.3명당 1명)
1	78,250원	81,750원
2	72,600원	75,840원
3,4,5	66,950원	71,620원

▢ 적용일자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변경된 수가에 따른 이용료

1.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31일 기준)

등급	1일수가	본인부담금			1달식비	합계(본인부담금+식비)		
		일반(20%)	경감(12%)	경감(8%)		일반(20%)	경감(12%)	경감(8%)
1	78,250	485,150	290,904	194,060	238,700	**723,850**	**529,604**	**432,760**
2	72,600	450,120	270,072	180,048	238,700	**688,820**	**508,772**	**418,748**
3,4,5	66,950	415,090	249,054	166,039	238,700	**653,790**	**487,754**	**404,736**

2.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31 기준)

등급	1일수가	본인부담금			1달식비	합계(본인부담금+식비)		
		일반(20%)	경감(12%)	경감(8%)		일반(20%)	경감(12%)	경감(8%)
1	81,750	506,850	304,110	202,740	238,700	**745,550**	**542,810**	**441,440**
2	75,840	470,208	282,125	188,083	238,700	**708,908**	**520,825**	**426,783**
3,4,5	71,620	444,044	266,426	177,618	238,700	**682,744**	**505,126**	**416,318**

*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에 따라 수급자 본인부담금도 매월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인이 적용된 월에만 변경된 본인부담금 적용<매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추가 비용 부담 여부 공지>

효성노인건강센터 원장